



접수번호

									-				-				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-	--	--	--	---	--	--	--	--

보험계약 대출 신청금액

■ 보험계약 대출 약정서

[illegible]

■ 개요

- ▶ 대출기간 :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(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)
- ▶ 변액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실 경우 월 보험료가 매월 납입되더라도 계약이 해지(실효)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- ▶ 변액 보험의 경우 청구금액이 지급 가능금액을 초과할 경우 회사가 지급 가능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- ▶ 기한이익상실 및 보험계약해지, 조속변경 통지 의무 등은 하단의 약정서 본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보험계약대출 약정서

본인은 AIA생명보험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칭함)로 부터 보험계약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 (정의)

- (1) "보험계약대출"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"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"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.

□ 동의

제2조 (외화대출의 용도제한 및 자료제출)

- (1) 계약자는 한국은행의 「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」 제2~9조에 따라 본 약정에 의한 외화대출을 각호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의 자금 (2)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
- (2) 계약자는 회사가 한국은행의 「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」 제2~10조에 따라 제 (1)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(※ 외화대출의 경우에 한함) □ 동의

제3조 (보험계약대출 약정기간 및 원리금상환)

- (1) 보험계약대출의 약정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 보험기간 내로 하며, 보험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.
(단, 2005.06.01 이후 판매상품은 보험료미납으로 해지된 상태에서는 상환 불가함.)
- (2)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(연금보험의경우 연금개시전)내로 하고, 본인은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.

□ 동의

제4조 (대출이자)

- (1)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,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.

- (2)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(이하 “이자 납입일”이라한다)에 납입하며,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응당일에 월복리로 부리하여 미수이자에 부과한다.
- (3) 차주인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자 납입일 이전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.
- (4) 대출이자는 은행자동차보험에 의한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이체일에 납입한다.

□ **내의**

제5조 (기한의 이익상실 및 보험계약해지)

- (1) 계약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지 않거나 제2조에 의한 용도제한 및 자료제출요구를 위반한 경우, 또는 해지환급금 등에 가압류·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즉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.
- (2)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해지환급금으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리금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.
- ① 계약자가 약정한 시기에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
 - ② 기타 기한의 이익 상실 등 회사의 채권 보전상 필요한 때

□ 동 의

제6조 (우선변제)

보험약관에 의거 보험금(또는 환급금)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변제 충당 순서는 이자,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.

□ 동의

제7조 (주소변경통지)

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겠으며 만약 주소 변경 시
통지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□ 동 의

제8조 (기타)

이 증서에 의거 취급한 보험계약대출의 소요 인지세 및 기타 비용은 차주인 계약자가 50%, 회사가 50% 균등 부담한다.

□ 동의

■ 계약자확인 동의란

1. 본인은 상기의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,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약정합니다.
2.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일정기간 미납하여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약 될 수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 계약자 : (서명)

※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의 콜센터(1588-9898) 및 인터넷 홈페이지(WWW.AIA.CO.KR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